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

- 2026년 1월 1일 시행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24.

국토교통부장관

1. 시행일 : 2026. 1. 1.

2. 202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구분 /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량	GNSS	1점		619,000	634,000	650,000
	T / S	1점		1,116,000	1,146,000	1,181,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량	GNSS	1점		106,000	109,000	134,000
	T / S	배각법	1점	115,000	118,000	141,000
		방위각법	1점	104,000	106,000	133,000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 종목별	기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별(㎡)	9,000원 이하	9,001원~26,000원	26,001원~51,000원	51,001원~170,000원	170,001원~1,710,000원	1,700,001원~8,530,000원	8,530,001원~17,060,000원
분할측량	토지(도해)	1필지(분할후)	1,500	200,000	243,000	286,000	372,000	429,000	458,000	486,000
	임야(도해)	1필지(분할후)	5,000	251,000	304,000	358,000	465,000	537,000	573,000	609,000
	수치	1필지(분할후)	1,500	193,000	235,000	276,000	359,000	414,000	442,000	469,000
경계복원측량	토지(도해)	1필지	300	305,000	371,000	436,000	567,000	654,000	698,000	741,000
	임야(도해)	1필지	3,000	379,000	461,000	542,000	705,000	813,000	867,000	921,000
	수치	1필지	300	262,000	318,000	374,000	486,000	561,000	598,000	636,000
지적현황측량	토지(도해)	1필지(분할후)	1,500	180,000	218,000	257,000	334,000	385,000	411,000	437,000
	임야(도해)	1필지(분할후)	5,000	225,000	274,000	322,000	419,000	483,000	515,000	547,000
	수치	1필지(분할후)	1,500	174,000	211,000	248,000	322,000	372,000	397,000	422,000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토지(도해)	1필지	300	306,000	371,000	437,000	568,000	655,000	699,000	743,000
	임야(도해)	1필지	3,000	380,000	462,000	543,000	706,000	814,000	869,000	923,000
	수치	1필지	300	262,000	319,000	375,000	487,000	562,000	600,000	637,000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금액단위 : 원)

구분 /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36,000	614,000	688,000
		임야	1필지	5,000	546,000	727,000	815,000
	수치		1필지	1,500	416,000	587,000	664,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521,000	735,000	831,000
	수치		1필지	1,500	540,000	761,000	856,000

구분 /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75,000	530,000	597,000
		임야	1필지	5,000	471,000	625,000	699,000
	수치		1필지	1,500	399,000	568,000	637,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63,000	350,000	394,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334,000	413,000	461,000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지구계·지구내		1점		76,000	97,000	112,000
	•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는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5,000	71,000	80,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6,000	80,000	87,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63,000	84,000	90,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3,000	67,000	74,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5,000	77,000	87,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57,000	75,000	83,000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구분
종목별</th><th colspan="2" rowspan="2">기 준</th><th colspan="3">지 역 별</th></tr>
<tr><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 rowspan="5">지적확정측량</td><td>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td><td rowspan="4">1㎡</td><td>919.1</td><td>940.6</td><td>1,017.8</td></tr>
<tr><td>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td><td>75.6</td><td>77.5</td><td>79.7</td></tr>
<tr><td>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td><td>384.9</td><td>394.1</td><td>406.3</td></tr>
<tr><td>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td><td>75.6</td><td>77.3</td><td>79.8</td></tr>
<tr><td colspan="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개발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사업,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85%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농어촌정비법」제8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구획정리는 측량지구 면적이 5,000㎡이하인 경우 5,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30%를 적용한다.</td></tr>
</table>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구분 /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치		1필지	356,000	407,000	460,000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107,000	110,000	114,000
		임야		107,000	110,000	114,000
	수치			76,000	79,000	80,000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	519.8	532.8	547.7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	74.4	76.1	78.6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삼각점	1점	344,000	353,000	363,000
	지적도근점	1점	16,000	16,000	16,000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수치	1필지	31,000	46,000	51,000
	임야		43,000	55,000	59,000

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구분		단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산화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221,000	227,000	234,000
		임야			243,000	249,000	256,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장	지적도크기	47,000	48,000	49,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지적전산 지료정비	토지·수치		1필지	필지	27,000	28,000	29,000
	임야				36,000	36,000	38,000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0,000	10,000	10,000
	수치				10,000	10,000	10,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7,000	17,000	18,000
		임야			18,000	18,000	19,000
	수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38,000	141,000	144,000
		임야			174,000	176,000	182,000
	수치				95,000	97,000	100,000
	• 본 단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도면작성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4,000	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은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끝.